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병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320

발의연월일: 2020. 9. 28.

발 의 자: 강병원 · 이원욱 · 김병욱

최종윤・진성준・민병덕

고영인 · 이광재 · 조정훈

강민정 · 조승래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의료인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직업적 윤리가 요구됨. 그러나 최근 의료인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등 실효성 없는 징계가 이어지며 환자들의 불안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.

현행법에서는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여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나, 이 외의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도 의료면허에 대한 별다른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.

반면, 변호사·세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확정된 경우 면허의 결격사유로 인정되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있어직종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.

이에 금고 이상의 형(刑)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

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·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·금고 이상의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·파산선고를 받고복권(復權)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,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,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4호, 제8조제5호·제6호·제7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금고 이상의 형(刑)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7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(復權)되지 아니한 사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의료인 면 허를 취득한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8조제4호부 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8조(결격사유 등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

했

1. ~ 3. (생략)

료인이 될 수 없다.

혅

4. 이 법 또는 「형법」 제233 조,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 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 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). 「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, 「지역보 건법」, 「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」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, 「농어촌 등 보건의 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」, 「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」,「혈액관리법」, 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... 「약사법」, 「모자보건법」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

개 정 안

제8조(결격사유 등) 다음 각 호의 제8조(결격사유 등) -----

-----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. 이 법 또는 「형법」 제2334. 금고 이상의 형(刑)을 선고조, 제234조, 제269조, 제270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조,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자

<u>ユ</u>	형의	집	행이	종	료되?	지 아
<u>니</u>	하였거	나	집행	을	받지	아니
<u>하</u>	기로 :	확정	되지	0}	·니한	자
<신	설>					

<신 설>

<신 설>
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
- 6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7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(復權)되지 아니한 사람